

<붙임 1>

전문인력 고용 지원

- (개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이하, 전문인력)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함
 - ※ 해당 전문분야는 전문 인력의 경력·자격·학력을 ‘경영·인사·노무·재무·마케팅’, ‘제품·기술 개발’, ‘기술·기능’, ‘안전·보건’, ‘정보통신’ 으로 나누어 판단

<전문인력 요건>

경력 요건	가. 고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기획, 인사·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 또는 마케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고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정보보호 관련 업무(보안제품개발, 침해사고 대응,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석, 보안컨설팅,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정책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고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고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자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등 기타 부처 인건비 지원과 중복 금지(‘일모아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자격 요건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이하 ‘안전·보건관리자’라 함)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관리대행기관(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이 지침 시행전부터 위탁한 경우에 한정함)을 철회하고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지 않았으나, 업무의 위탁 외에 추가로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 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라.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어 통역사 마. 정보보호관련 자격증 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개인정보관리사(CPPG)
학력 요건	가.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고용·노동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나. 이공계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 전자상거래업	47911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전기통신업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연구개발업	70
○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 광고업	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 경영컨설팅업	7153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전문디자인업	73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 포장 및 충전업	75994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 병원	861
○ 의원	862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